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464-14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3.

행 정 안 전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환 경 부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소 방 청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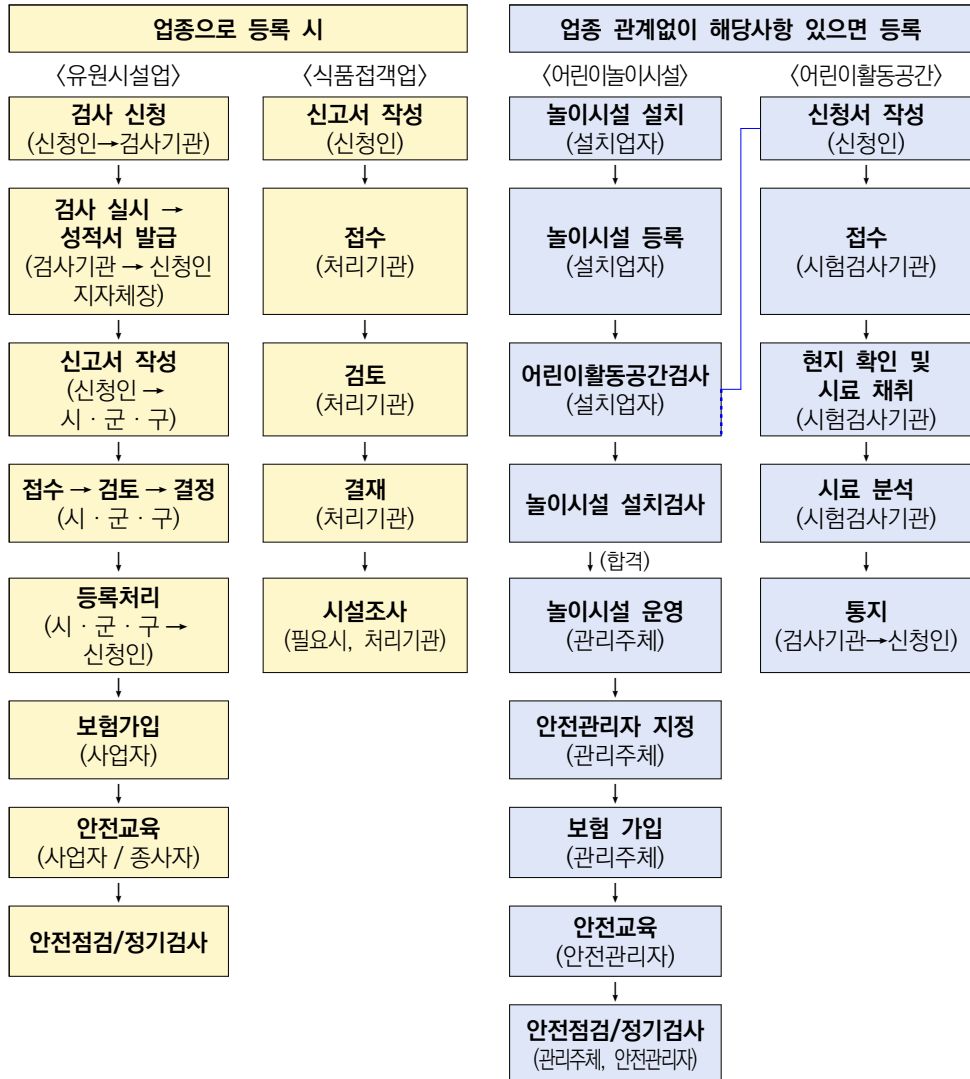
- ① 본 지침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인쇄물로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유상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② 본 지침은 **2023.1.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1. 목적	1
2. 용어의 뜻	1
3. 키즈카페의 유형	5
4. 키즈카페 관련 부처 및 법령	6
II.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신고·등록방법 및 절차	7
1.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7
2. 식품접객업의 신고	10
3.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	12
4.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	14
III. 키즈카페 운영 시 주요 의무사항 및 관리기준	16
1.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경우	16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22
3. 어린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31
4.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2
5.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항	37
IV. 행정청의 지도·감독 및 처분	43
1. 행정청의 지도·감독	43
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등	48

V. 키즈카페 운영 시 주의사항	58
1. 설치 관련 주의사항	58
2. 유지·관리 관련 주의사항	59
3. 이용·지도 관련 주의사항	61
4. 식품안전 관련 주의사항	62
참고 1 관계법령	65
1.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67
2. 식품접객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79
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행정안전부)	93
4. 어린이제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06
5. 환경 관련 (환경부)	109
6. 소방 관련 (소방청)	115
참고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	133
참고 3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 2)	141
참고 4 놀이기구별 안전이용 픽토그램	145
참고 5 소방시설 점검 기준	150
참고 6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152

□ 키즈카페 신고·관리 등 절차

●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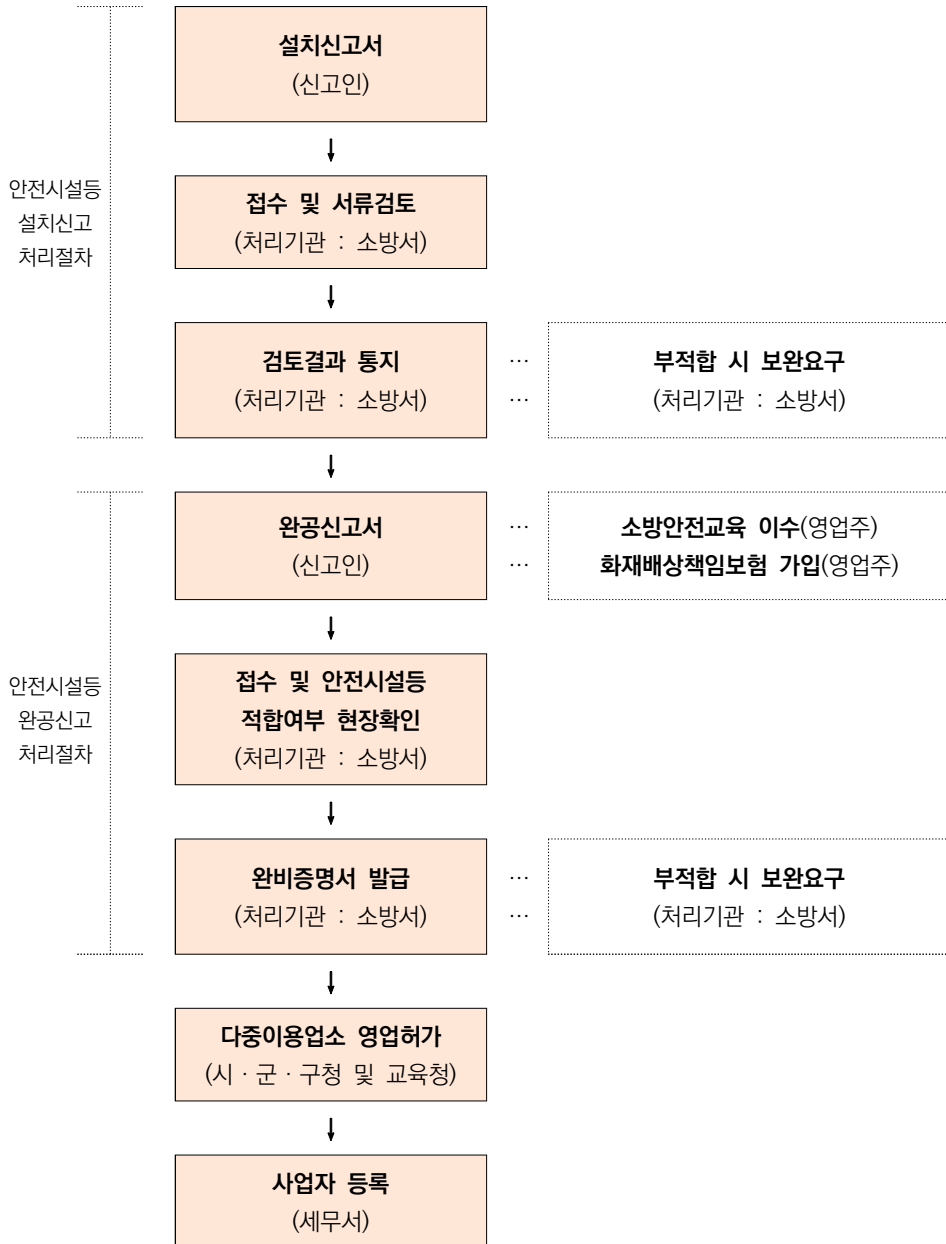


〈 주의사항 〉

※ 식품접객업으로 등록 시 유기기구 / 시설이 있다면 유기기구 / 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한다.

※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 시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업무흐름도



□ 키즈카페 관련 법률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설치前 제품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안전기준 마련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 중앙부처에서는 관계법령 및 제도 운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 등록, 관리 등

□ 키즈카페 안전관리 유의사항 (요약)

- 사업자는 각 시설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해야 함
 - * [유기기구 / 시설,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점검(관리주체),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 사용 등
- 사업장 내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구나 시설 등 이용 시에는 안전띠 등 **안전시설**을 항상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영유아는 신체운동 능력이 미숙하고 **상황판단이 부족**하므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반 하에 이용**하도록 안내함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 등을 고지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I 개요

1. 목적

이 지침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 복합 놀이제공업소인 키즈카페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함으로써 담당 공무원과 키즈카페 운영자 등이 관련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뜻

● “키즈카페”란,

-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상기에 따른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놀이기구가 없더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외 대상

식품접객업(식·음료 판매)이 주가 되는 형태로서, 손님에게 무료(서비스)로 유기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 예시) OO감자탕, OO레스토랑, OO초밥, OO갈비 등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란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킬 제공을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

● “유원시설업”이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
- 유원시설업 종류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이 있다.

【유원시설업의 종류】

유원시설업의 종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종합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어린이놀이기구”란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 “어린이제품”이란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 제외 대상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5.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등

● “안전인증”이란

-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접객업”이란

- 손님이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토록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포함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 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 “소방시설”이란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이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키즈카페업 등을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및 특수학교 교실,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완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3. 키즈카페의 유형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 실내 공간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나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놀이기구 이용을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4. 키즈카페 관련 부처 및 법령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기구 ·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설치前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 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료 · 마감재료 · 토양 ·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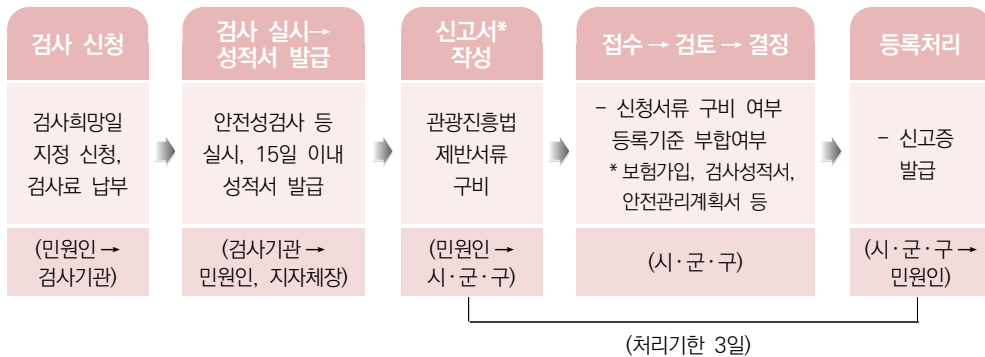
☞ 중앙부처에서는 관계법령 및 제도 운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 · 허가, 등록, 관리 등 대민업무 수행

II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신고·등록방법 및 절차

1.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

● (신고절차)



* 신고서 양식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 (유원시설업의 신고)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성검사 등) 위의 제출서류 중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 현황('23.1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 이메일	주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설안전평가센터	031-428-8463 (031-624-4353)	www.ktc.re.kr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사)안전보건진흥원 안전성검사본부	02-2105-6123 (02-809-7900)	www.shai.or.kr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 안전검사기관 지정현황 변경 및 검사신청 관련 사항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참고

● (중요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첨부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주의사항

- ①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유원시설업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으로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유기사설 또는 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유원시설업 신고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를 각각 하여야 한다.
- ※ 어린이놀이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2. 식품접객업의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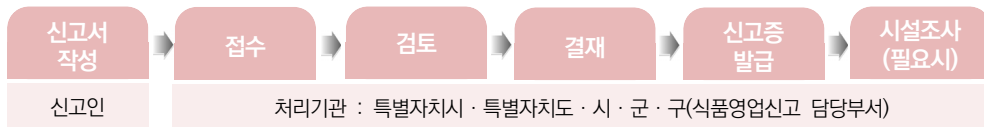
- (식품접객업 신고) 식품접객업의 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 받은 신고관청은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주의사항

- ①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식품접객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으로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어린이놀이기구도 설치하였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Q&A

- Q : 키즈카페에서 완제품 음료(콜라 등),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료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음식료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설치 검사에 합격한 후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을 등록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등록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시설등록을 하고 시설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시설번호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 현황(’23.1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7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3440 ~3442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에스이엘안전기술원	1811-9142	한국융합기술연구원	055-713-2012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	02-579-7701	국민재난방지협회	051-612-6665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02-6010-1600		

※ 안전검사기관 지정현황 및 놀이시설 등록신청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참고

Q&A

Q : 설치검사 신청을 위해서 시설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하며, 놀이시설 등록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청 소관(학교·유치원·학원), 지방자치단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Q&A

Q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아래 기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 대상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아래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kre.kr), 02-2102-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x.re.kr), 1899-7654

☞ 주의사항 :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해야 함

※ 어린이놀이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4.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환경보건법」 제23조)

- **(어린이활동공간)** 키즈카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제1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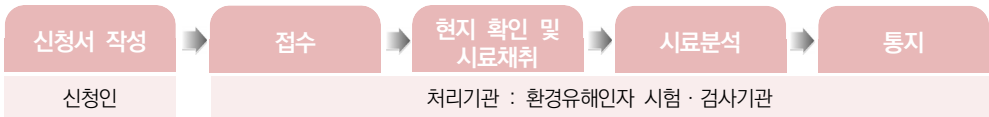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공간과 연결한 공간을 포함한다)
...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축, 증축(연면적 33m² 이상), 수선(연면적 70m² 이상)한 키즈카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키즈카페 관리자’)는 해당 공간이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확인검사를 받기 위해 키즈카페 관리자는 확인검사 신청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기관 현황('23.1월 기준)】

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1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2102-2608 02-2102-2680
제2호	(재)FITI시험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68
제3호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15번길 74	031-428-3817
제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02-2284-1656
제7호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02-860-7150
제9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02-2637-1234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기관 지정(www.nier.go.kr)” 참고

Q&A

Q : 확인검사는 어떤 경우에 면제받게 되나요?

A : 환경표지 인증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수지) 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증축·수선한 경우입니다. 다만, 신축한 경우는 증축 또는 수선과 달리 환경표지 인증 도료 등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A

Q : 붕붕뽀뽀 · 미니 모험놀이 · 미니에어바운스 설치된 키즈카페, 완구가 제공되는 키즈카페가 최근 법정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 영업 중인 위 키즈카페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놀이형(붕붕뽀뽀, 미니 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완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2023년 5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등 「환경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네 · 미끄럼틀 · 정글짐 등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키즈카페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등 「환경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III 키즈카페 운영 시 주요 의무사항 및 관리기준

1.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유원시설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

유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내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뽀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2호)」의 기구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23년 개정·시행 내용] [별표3]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II.공통기준 1. 기본 요구사항 15)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검사 및 점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등)

- **(확인검사)**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 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문체부 지정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행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형	내용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궤도·주로·수로·지역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5 km/h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가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터로보트 (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 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나) 고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아저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다) 관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모험관(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 (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라) 놀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봉뽀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아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킷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 **(정기확인검사, 재확인검사)** 유원시설업자는 아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물레이션, 다이내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뽀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 워터에어바운스 등

- **(기타유원시설업자 자체 안전점검 의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나목에 따라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11의 제2호 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 「관광진흥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 안전교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제42조)

-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별표11 제2호나목2)의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23.1월 기준) 한국관광공사에서 교육 시행,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참조

-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 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

-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마. 사고보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다음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바.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 공통사항 >

-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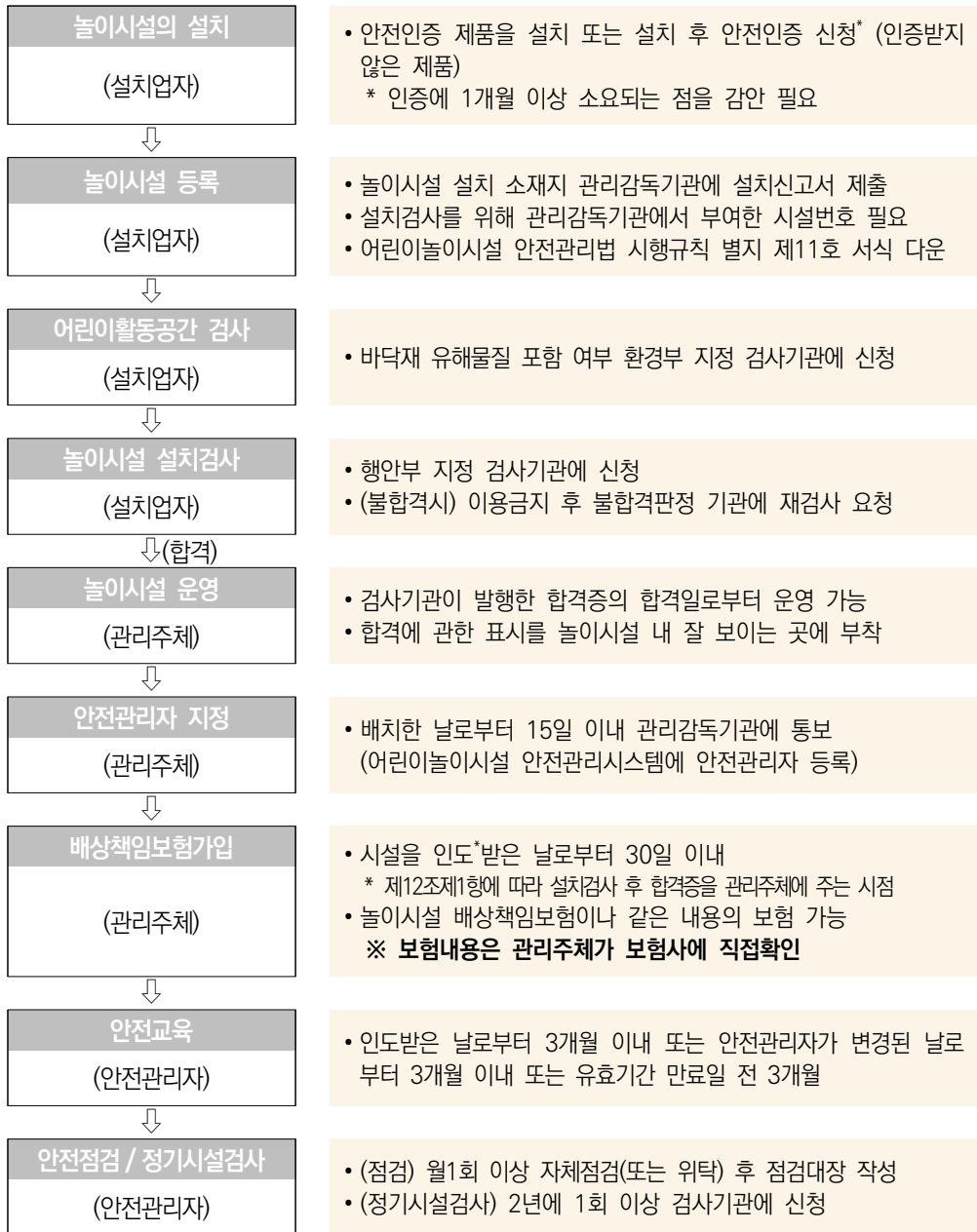
-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 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준수사항 및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사설은 제외한다.
-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유원시설업 개별사항 >

-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리 절차



나.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놀이시설의 합격·불합격을 판정한다.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는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권고사항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 권고사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놀이시설 구성, 기구별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권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안내하도록 한다.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등)

- (설치검사)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기구 일부를 추가로 설치(재설치, 시설이동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2조)
 -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에 시설번호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 현황(’23.1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7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3440 ~3442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에스이엘안전기술원	1811-9142	한국융합기술연구원	055-713-2012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	02-579-7701	국민재난방지협회	051-612-6665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02-6010-1600		

※ 안전검사기관 및 놀이시설 신청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 참고

- 검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수수료 상한금액 이하로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고시)」 참고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별표5)

설치검사 전 준비사항

1.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재(표면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금속 등의 환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신청에는 시설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설치검사 전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을 요청하여 시설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2조)
 -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검사기관 및 신청서식은 설치검사와 동일
 -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별표5)
- **(불합격 시설 재검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 시에는 즉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 및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의2, 운용요령 고시 제5조)
 -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이용금지 조치요령에 대한 상세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고시)」 제13조 및 별표3을 참고한다.

Q&A

Q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설치검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으나, 안전검사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Q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시스템에 미검사 또는 미이수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입력해야 하나요?

A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검사에 대한 결과는 해당 검사기관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 결과 입력은 검사합격증 발급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검사 및 교육기관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 (안전점검)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위임을 받은 자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매일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항목 및 주기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고시)」 제11조 및 별표2를 참고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안전점검실시대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재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마.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로 하여금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 안전교육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안전교육 시기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교육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 기관별 오프라인 교육일정, 장소 및 사이버교육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 고객참여마당-안전교육일정” 등 참고

● 교육 효력은 안전관리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교육실적은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일괄 등록한다.

- 교육 유효기간이 남은 자가 타 시설에 안전관리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실적등록 변경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합격 증빙서류와 연락처 등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한다.

- 안전관리지원기관(교육기관)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지정하며, 지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지원기관(교육기관) 현황('23.1월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1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785-1280~7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한국생활안전연합	02-3476-01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02-882-0050	대한산업안전협회	02-6275-8653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02-2635-3361	한국재난안전기술원	02-780-4624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2-493-0978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02-861-7714
한국안전교육협회	055-352-2276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3440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02-573-3330	한국안전협회	055-266-1191
선진화전략연구소	062-515-2293	국민안전교육진흥회	051-501-1961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국민재난방지협회 재난안전기술원	051-612-666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6-5868
한국시설안전연구원	053-794-0888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1599-1972
에스이엘안전기술원	1811-9142	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	070-4284-3395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1800-6832	한국레저안전협회	02-836-7330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042-527-1231	예방안전지원센터	02-2265-6660
울산예방안전센터	052-254-9988	한국안전기술사단법인	033-263-7900
도담놀이시설연구원	031-241-5705	시민안전예방협회	031-898-4900
놀이시설안전기술협회	041-577-1029	한국재난안전협회	051-868-1193
대한안전놀이시설협회	041-561-5320	국민안전교육협회	02-403-3070
국가안전원 서울본부	1644-9816	미래안전기술협회	02-2215-0262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02-6010-1600		

※ 기관별 교육일정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참고

Q&A

Q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결과는 교육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주체는 별도로 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기관에 입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바. 사고배상 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21조)
- 관리주체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사.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2조)
- 법 제22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한 사고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 '2.부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상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치아골절 포함)
5. 출혈이 심한 경우(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출혈)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 까지 관리대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점검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 하여 정한 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개선을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준수사항

-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2)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5)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시스템(www.cpf.go.kr)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0조)

Q&A

Q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청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시스템으로 신고 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안전관리자는 지정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Q&A

Q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명, 주소, 관리주체 정보, 놀이기구 등 놀이시설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A : 관리주체에게는 시스템 로그인 ID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직접 놀이시설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놀이시설 정보수정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관리감독기관에 시설정보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후 가입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보험등록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정상 저장되었는데, 놀이시설을 조회해보면 신청이 되지 않고 다시 “등록” 버튼이 다시 활성화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런 현상은 보험가입내역 등록 시 보험증권 첨부파일의 이미지 형식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험이미지 첨부 시 이미지 형식을 jpg, gif, png 파일로 변경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Q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입니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비번)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에 부여됩니다. 관리주체에게는 별도로 ID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놀이터를 시설명 등으로 검색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Q&A

Q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또는 보험가입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정보를 잘못입력해서 재등록하려고 하는데 승인요청중이라는 문구만 보이고 재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관리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보험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관련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으로 신청내역이 전송됩니다.

-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에서 관련 신청 정보를 삭제해야 다시 치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니, 관리감독기관에 삭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cpf.go.kr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어린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제2항)

-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에 대한 기준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등을 참고한다.

4.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등임
[어린이활동공간 종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2.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키즈카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가.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제23조)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환경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도료 및 마감재료 기준

1.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 (DEHP 등 7종)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과 같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금지 방부제

1.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2.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토양 기준

1.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바닥재 표면재료 기준

1.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2.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mg/kg 이하일 것
3.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DEHP 등 7종)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기준

1.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mu\text{g}/\text{m}^3$ 이하일 것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mu\text{g}/\text{m}^3$ 이하일 것

-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검사방법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매뉴얼'을 참고한다.

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수지)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검사기관 현황(23.1월 기준)】

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1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2102-2608
제2호	(재)FITI시험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68
제3호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15번길 74	031-428-3817
제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02-2284-1656
제7호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02-860-7150
제9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02-2637-1234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기관 지정(www.nier.go.kr)” 참고

● **(검사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 재료, 합성고무(수지)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

증빙 방법

1. (증축시) 증축 후 30일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 지사 또는 교육감 등 소관 감독기관에 제출
2. (수선시) 환경표지 인증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함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의 잔여분 등
 -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환경표지제품 여부를 확인
 - ※ 소유자는 확인검사 면제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검사기간)** 확인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키즈카페의 경우 환경안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Q&A

Q : 강화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납 기준 90mg/kg, 프탈레이트류 기준 0.1%)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 '22.4.7.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22.4.7.부터 적용되고, '22.4.7.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26.1.1.부터 적용됩니다.

Q&A

Q : 환경안심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환경안심 인증을 받으려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현장조사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소요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02-3407-15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1. 하루 3번, 30분씩 실내 환기시키기
 - 환기는 매일 오전 10시 이후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3번 이상, 30분씩 모든 창문과 문을 동시에 열어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오염된 실내공기를 바꿔 준다.
2. 조리실과 화장실에 기계식 실내 환기장치 설치하기
 - 강제로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3. 에어컨, 공기청정기 필터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 에어컨,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 세균·곰팡이의 번식, 서식을 막는다.
4.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 녹색식물*은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수분을 배출하여 실내에 공기 청정효과를 가져온다.
 - *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행운목, 스킨답서스, 산호수, 관음죽, 벤자민고무나무 등
5. 새 건물 입주 시 Bake-out(건조화), Flush-out(환기) 충분히 실시하기
 - (bake-out)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 38~40℃로 실내온도를 맞춘 후, 옷장이나 모든 가구의 문을 열어 놓고 3~4시간 동안 난방 후 창문을 열고 환기시킴(3~4회 실시)
 - (flush-out)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등에 부착된 실내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 * 실내온도 16℃ 이상, 상대습도 60% 내외로 유지하고, 가능한 많은 환기량을 확보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실외로 방출해야 함
6.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항목	미세먼지(PM-10) ($\mu\text{g}/\text{m}^3$)	미세먼지(PM-2.5) ($\mu\text{g}/\text{m}^3$)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 m^3)	일산화탄소 (ppm)
기준치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7.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m^3)	총휘발성유기화합물 ($\mu\text{g}/\text{m}^3$)	곰팡이 (CFU/ m^3)
기준치	0.05 이하	148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 대상시설 : 연면적 430㎡ 이상인「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5.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소방안전 기준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및 하위법령)

● 소화기 설치·유지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4조제1항)

- 소화기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높이 1.5m이하)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3.3kg)의 경우에는 20m이내, 대형소화기(20kg)의 경우에는 30m이내가 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음식점 주방에는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분말형태의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므로,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 내용연수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를 받고 적합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7조)

- 옥내소화전은 층마다 설치하며,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옥내소화전까지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호스는 40mm이상의 것으로 건축물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15m 2벌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와 노즐을 결합해 놓아야 한다.
- 소화전함에는 밸브의 조작, 소방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소화전함 앞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 **화재 발신기 및 감지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고시)」)

- 화재 발신기는 조작성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또한 화재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며,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화재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연기감지기 : 복도, 계단, 승강로 등
- 감지기 표면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아야 하며, 탈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10조)

- 스프링클러 작동시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 **피난 유도등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5조 및 제6조)

- 유도등은 출입구, 비상구, 계단참 등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안내 방향이 적정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파손, 변형, 탈락되지 않아야 하며,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법 제10조)

- 계단, 복도, 비상대피로 등 피난시설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하며, 화재 및 연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문은 폐쇄하거나 훼손·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피난안내정보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4조)

-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은 다중이용업의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영업주의 성명·주소
- ②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 ③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 ④ 허가등 일자

-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소방시설법 제22조,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을 출입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은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실시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것
 ② 키즈카페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5호에서 정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비상구, 내부 피난 통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마.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제1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다중이용업소법 제14조의2)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등

아.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화재취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 주방에서는 화기를 취급하고 가스 및 식용유를 사용하므로, 화재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 쓰레기 등 가연물질을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부근에 방치할 경우에는 화재 시 피난장애 및 화재확산 원인으로 작용하여 인명피해 요인이 될 수 있다.
 - 음주를 제공할 경우에는 심리적 안전의식 해이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할 수 있다.
- 화재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이용객들에게 비상구 위치 등 내부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한다.
 - 영업주 및 종사자는 소방안전교육 및 피난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영업장 또는 주변에 인화성 가연물품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상시 확인한다.

- 휴지통은 철재로 된 것을 사용하고, 수시로 비우고 불씨의 유무를 확인한다.
- 이동식 전기난로, 유류 및 가스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한다.
-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에는 가연물을 방치(적치)하지 아니하고, 가스시설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가스를 취급하는 주방 및 보일러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금속 배관을 사용한다.
- 영업종료 등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스밸브 잠금상태를 상시 확인한다.
- 콘센트 및 전선 주변에는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방 등 습기가 높고 물방울이 직접 떨어지는 위치에는 전기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문어발식 전원코드 사용을 자제하고,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화재발생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하게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119로 화재사실을 신고한다.
- 화재 발신기(비상경보설비) 누름스위치를 눌러 화재발생 사실을 알린다.
- 화재발생 초기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전기차단기 이용하여 단전 시키고,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 시에는 가스 중간밸브를 차단한다.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점검 착안사항)

- 소화기는 수시로 점검(압력계-녹색)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 위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유사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등 피난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설치하면 아니된다.
- 방화문은 상시 자동폐쇄상태 유지를 유지하고 출입문 덧문설치로 인한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피난유도등은 점등상태를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단부의 예비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당겨서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소방시설 등의 작동여부 확인하고, 고장시설은 즉시 정비·교체한다.

1. 행정청의 지도·감독

가.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제2항)

- (검사결과 조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 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사고조사 등) 중대한 사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나. 식품접객업 관련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제35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등 조치

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놀이시설법 제13조, 제17조의2, 제22조, 제23조)

- **(불합격 놀이시설 점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불합격 놀이시설의 시설개선 이행 및 완료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 지도·감독)**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그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사고조사)**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보고·검사)**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라. 어린이제품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마.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련 (환경보건법)

- 시·군·구 및 교육감은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 교육감 등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에게 최대 40일(1차 20일, 20일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확인검사 이행명령)할 수 있다.
 - 확인검사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이행 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명령 이행보고서(확인검사 결과증명서 첨부)를 시·군·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 또는 교육감은 이행보고를 받은 경우나 확인검사 기간 도과 후 확인검사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군·구, 교육감 등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이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확인검사결과를 통보받았을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인허가 부서 통보 및 해당 활동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외 지도점검 절차, 방법 등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Q&A

Q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①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②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③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로,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수지)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입니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등

가.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관광진흥법」 제35조, 제36조, 제84조)

●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
과징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1차	2차	3차	4차	종합	일반	기타
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1개월	취소 (신고 3개월)	1600	1200	800
다. 2.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5일	사업 정지 10일	영업소 폐쇄 명령			400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 (신고 폐쇄)						
바. 법 제8조(관광사업의양수 등)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개월 또는 사업 계획 승인 취소	사업 정지 2개월	취소 (신고 3개월)	400	320	120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 명령	취소 (신고 업종의 경우, 시정 명령)	신고 업종의 경우 영업소 폐쇄 명령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1차	2차	3차	4차	종합	일반	기타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2개월	취소 (신고 3개월)			
커.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1개월	취소 (신고 3개월)	2000	1600	1200
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20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3개월	2000	1600	1200
퍼.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20일	사업 정지 1개월	1200	800	400
퍼.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2개월	취소 (신고 3개월)	2000	1600	1200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2개월	취소 (신고 3개월)	800	400	80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 명령	사업 정지 10일 또는 사업 계획 승인 취소	사업 정지 20일	취소 (신고 1개월)			

- **(폐쇄조치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동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 **(과태료)**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마.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 제1항	100	200	300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1조)

- **(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라.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50	350	500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50	350	500
사.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150	200	300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150	200	300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차.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4호	150	200	300
카.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3항	100	150	200

다. 어린이제품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과태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 제3항제13호	150 130 100 80 50	170 150 120 100 70	200 180 150 130 100
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43조 제3항제19호	150 130 100 80 50	170 150 120 100 70	200 180 150 13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소.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2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라.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환경) 관련 (「환경보건법」 제23조, 제31조, 제33조)

- **(개선 명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활동공간의 관리자·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이행 시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과태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250	350	5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250	350	500

- **(벌칙)**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소방시설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1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호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액이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 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4호	200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8호				
1)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9호				
1)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15호	50	100	300	

바. 다중이용업소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100 200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100 100	30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200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6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00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V 키즈카페 운영 시 주의사항

1. 설치 관련 주의사항

- 설치하는 기구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인지,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다.
- 기타유원시설업 최초 인허가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연 1회 이상
-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는 서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고 이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유기기구에는 이용자 연령과 최대 이용인원을 표시한다.
- 유기기구의 구동부에는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잠금장치 등의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하며,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트램플린 이용 중에 어린이들이 튕겨나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와 그물 등으로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 트램플린 이용 중에 어린이들이 천정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천정에 완충재 등으로 보완한다.
- 미끄럼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틀 주변 바닥에는 완충재를 설치하고, 미끄럼틀 도착지점에도 완충재를 설치한다.
 - 이때 미끄럼틀의 각도 및 충격구역(완충재 설치구역) 등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을 참고하도록 한다.

- 기구를 감싸고 있는 완충재(스펀지 등)를 고정하는 케이블 타이 등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 케이블 타이 끝부분이 아이들 활동영역과 반대쪽에 위치하도록 설치, 타이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는 제품 사용 등
- 어린이의 눈이나 머리가 닿는 높이에 설치되는 파이프나 기둥은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호대를 설치하고 주의 표시를 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KC 마크 및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한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KC 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한다. 또한 구매한 제품은 제품과 제품 포장의 KC 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 표시사항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KC 마크를 확인한다. 또한 구매한 제품은 제품과 제품 포장의 KC 마크가 있는 표시사항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 건축자재, 기구·시설자재, 마감재 등은 환경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자재 또는 환경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유지·관리 관련 주의사항

- 정상적인 이용 방법이 아닌 놀이기구 등의 오용과 과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 등 보호 관찰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가 접근가능한 모든 공간은 성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또한, 통로가 막힘으로 인해 막다른 골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아동안전용품을 설치 하도록 한다.
 - ※ 문틈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모서리 보호대, 콘센트 안전커버, 미끄럼 방지 스티커 등

- 동력을 이용하는 유기기구의 출입구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떨어트릴 위험이 있는 소지품이나, 질식우려가 있는 끈 등의 소지를 금지한다.
- 어린이들이 키즈카페에 입장하기 전에 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손과 발 등을 소독 후 입장시킨다.
- 키즈카페 내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는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 실내에서는 충분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키즈카페 내의 바닥, 각종 기구 및 제품, 완구 등을 주기적으로 살균·소독 하고,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 뿐만 아니라 기구의 하단, 틈새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어린이들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제품(블라인드 줄, 단추 등)을 실내에 두지 않는다.
- 실내 바닥은 어린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고, 장애물을 없애 밟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 주요 부품을 제작사 매뉴얼 또는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교체한다.
- 유기기구 또는 놀이기구를 변형하거나 이동시키는 경우, 그에 따른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한다.
- 에어바운스의 공기가 빠져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 위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에어바운스 표면 또는 이음새가 훼손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 또한, 공기주입기 또는 송풍기 주변은 접근을 차단하여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불꽃장의 깊이는 30cm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찢어지거나 찌그러진 불은 즉시 제거한다.

- 볼풀장의 경우 장난감 등이 유입되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1회 이상 볼을 전부 꺼내어 볼풀장 바닥상태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다.
 - 특히, 장난감 자판기용 플라스틱 캡슐 등 볼풀장용 볼과 유사한 형태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완충재나 외장재가 손상된 경우, 원래 제품과 동일한 제품(안전인증제품, 친환경제품 등)으로 즉시 보수한다.
-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블록장난감, 모래, 편백조각, 나무토막 등이 지정된 놀이공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소독·교체한다.
- 기구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해 그물망 등에 지퍼가 달려있는 경우,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으로 잠궤 놓도록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이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하는 도료·마감재료, 모래 등 바닥재의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만족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이용·지도 관련 주의사항

- 안전한 이용을 위해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별로 적절한 이용 방법과 이용상 주의사항(대상 연령이나 위험한 행위의 안내) 등을 “픽토그램” 또는 “안내문구”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안내표시판에 게시한다.
- 만 3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내·지도 및 관찰한다.
- 움직이는 유기기구의 경우, 출입구를 제외한 주변부의 접근 및 주변에서의 놀이를 차단한다.
- 이용객이 모두 하차할 때까지는 유기기구의 작동을 금지한다.
- 작동기구 또는 기구의 개구부·구동부에 손가락·발가락 등이 끼이기 쉬우므로, 접근방지 조치를 하고, 이용 시 안내를 실시한다.

- 트램플린의 경우 몸무게가 비슷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양말을 신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에어바운스형 놀이기구는 기구표면과 피부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므로 양말 및 토시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기구의 이용을 금지한다.

4. 식품안전 관련 주의사항

- 영업자는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영업에 사용하는 음식기 등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식품등의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해동된 냉동제품을 다시 냉동하여서는 안 된다.
-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 손님에게 진열·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다.

참 고

- 참고 1** 관계법령 65
- 참고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 133
- 참고 3**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2) .. 141
- 참고 4** 놀이기구별 안전이용 픽토그램 145
- 참고 5** 소방시설 점검 기준 150
- 참고 6**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152

법령목차

01. 기타유원시설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67
• 관광진흥법	67
• 관광진흥법 시행령	7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72
02. 식품접객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79
• 식품위생법	79
• 식품위생법 시행령	8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8
0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행정안전부)	9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9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9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02
04. 어린이제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06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06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108
05. 환경 관련 (환경부)	109
• 환경보건법	109
• 환경보건법 시행령	111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112
06. 소방 관련 (소방청)	11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27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36조(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제78조(보고·검사)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②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중지 명령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선 명령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 철거 명령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⑧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공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조문 생략)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유원시설업의 경우
 -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이전·폐기
 -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증
-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폐기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②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영을 정지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④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5항에 따라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⑧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 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 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유기사설·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 ②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 [별지 제14호서식]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유원시설업 신고증
- [별지 제19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관련 고시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2호, 2023.1.1. 일부개정]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0호]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1호]

02 식품접객업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제36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와 같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건강진단) ①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 3의2.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接客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제101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한 자
-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법6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 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폐업신고) ①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및 제41조의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②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③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교육내용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52조(교육시간) ①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 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 3시간
- ②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 6시간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100조 관련)

[서식 37] 식품 영업 신고서

[서식 4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42] 영업의 폐업신고서

[서식 49]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관련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8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 ③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7조(설치검사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⑥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
2.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제7조제6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정기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 ②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③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④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4.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7. 2도 이상의 화상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내장(內臟)의 손상

②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별표 4]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 [별표 5]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
-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7] 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3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 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②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②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③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⑥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별지 제12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3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제기 신청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4호의2서식] (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보수 판정) 시설 개선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제17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 실시대장 (제17조 관련)

○ 관련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8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7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2호]

04 어린이제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②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②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⑧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43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별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관련 고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609호]

※ 제품별 안전기준의 제·개정 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에서 확인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⑧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제33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로,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
2. 교육감: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증축·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별표 4] 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별지 제2호의5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서

[별지 제2호의6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

[별지 제2호의10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의11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

[별지 제2호의12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

○ 관련 고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 휴업·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폐업일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②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동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②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②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 ④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과세정보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③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동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안전시설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①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
 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②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주의 성명·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소재지
3. 다중이용업의 종류·영업장 면적
4. 허가등 일자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④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2.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한다) 1부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법 제9조의2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 1. 11.>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 [별지 제3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참고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

유형	명칭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가) 주 행 형	미니기차	 <p>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 (레일 안쪽 길이 30 m 이내)</p>
	이티로보트	 <p>정원 2인 이하인 승용물을 2대 이하로 연결하여 전기 동력으로 짧은 순환형 궤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배터리카	 <p>정원 2인 이하인 배터리 전기 동력 4륜 승용물을 이용자 스스로 핸들 조작하여 일정한 지역 내를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멜로디페트	 <p>정원 2인 이하인 동물모형의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별도의 안전울타리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5 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수상사이클 & 페달보트	 <p>수심 0.5 m 이하로 담수한 인공저수조에서 부양되는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발 또는 손으로 페달을 돌려 수면 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배터리보트	 <p>수심 0.5 m 이하로 담수한 인공저수조에서 부양되는 승용물을 이용자가 탑승하여 배터리 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5 km/h 미만의 속도로 수면 위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p>1인승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피칭롤링 회전하는 시설(안전매트 위에 설치)에 탑승하여 로데오타기를 체험하는 유기기구</p>	
	회전형 라이더	 <p>야자수, 회전목마, 문어, 로봇, 티컵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저속 회전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미니라이더		 
			<p>로봇, 자동차, 동물, 기차 등 모형의 승용물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병진, 요동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p>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p>승용물이 바닥 또는 상부의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1자유도 이상의 운동(저속회전, 병진, 요동 등)을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서 입체적인 움직임을 체험하는 유기기구(탑승인원 6인승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p>	
	미니 시뮬레이션	 <p>승용물이 바닥 또는 상부의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되어 1자유도 이상의 운동(저속회전, 병진, 요동 등)을 이용자가 영상을 보면서 핸들 등으로 직접 조작하여 입체적인 움직임을 체험하는 유기기구(탑승인원 6인승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p>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다) 관람 형	다이나믹시트		1열로 구성된 좌석을 바닥에 고정된 중심축 또는 편심축에 연결하여 저속으로 (병진, 요동 등)시켜, 이용자가 영상을 관람하며 입체적인 체험을 하는 유기기구(탑승인원 10인 이하)
	3D·4D입체 영화관 (좌석고정 영상시설)		이용자가 보조기구 또는 직접 눈으로 입체 영상물을 보며 스탠딩 또는 진동만을 주는 좌석에 앉아 음향, 조명 등 다양한 효과를 주어 이용객이 체험하는 유기기구
라) 놀이 형	붕붕뽀들		트램폴린 위에서 이용자가 뛰며 즐기는 유기기구
	미니모험놀이		롤러슬라이드, 타잔타기, 무지개언덕, 원통형건너기, 미끄럼타기, 볼대포 등 복합 놀이요소 기구를 이용자가 즐기는 유기기구(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 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 장치식 공기막 유기기구.(탑승높이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코르크 또는 고무마개를 쏘아 고정되어져 있는 과녁을 맞히는 유기기구(스크린사격, BB탄 등 연사 발사 제외)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이 영	공쏘기	 <p>공을 쏘아서 표적에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p>
	광선총	 <p>광선총을 쏘아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p>
	공굴리기	 <p>공을 굴려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p>
	표적맞추기	 <p>작은 화살을 던져 표적을 맞히는 유기기구</p>
	물쏘기	 <p>물총을 이용하여 표적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p>
	미니볼링	 <p>공을 목표지점까지 굴리는 유기기구</p>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별 이 형	미니농구	 공을 링에 골인시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공던지기	 공을 던져 목표물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공차기	 가상의 골대에 공을 발로 차서 넣어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에어하키	 2인이 손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상대방 골에 펙을 집어넣어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망치치기	 손망치로 화면 및 표적을 맞혀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펀치	 주먹이나 발로 목표물을 때려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이 장	미니야구	 <p>야구공을 던져 가상의 야구게임을 즐기는 유기기구</p>
	스키타기	 <p>스키 발판에 서서 양 옆 손잡이를 잡고 화면의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기구</p>
	팔씨름	 <p>팔모형의 기계와 팔씨름을 겨루는 유기기구</p>
	오토바이 타기	 <p>고정된 오토바이모형의 좌석에 앉아 영상물과 좌석의 롤링에 의해 오토바이타기를 체험하는 유기기구</p>
	자동차경주	 <p>운전석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서 핸들 및 레버를 조작하여 운전을 즐기는 유기기구</p>
	자전거타기	 <p>고정된 자전거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서 핸들을 조작하여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유기기구</p>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이 장	보트타기	 <p>고정된 보트 형태의 좌석에 앉아 화면에 따라 보트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기구</p>
	말타기	 <p>말 모형의 좌석에 앉아 승마체험을 즐기는 유기기구(단, 화면이 있는 경우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 만 해당됨.)</p>
	뮤직댄스	 <p>화면의 지시에 따라 발판, 드럼 등을 밟거나 두드리며 즐기는 유기기구</p>
	수상기구 타기	 <p>수상기구형태의 발판에 서서 화면을 통해 수상기구를 타는 체험을 하는 유기기구</p>
	건슈팅	 <p>화면의 적을 향해 기기와 연결된 전자총을 쏘서 점수를 얻는 유기기구</p>
	미니 슬라이드	 <p>바닥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물놀이형 유기기구 (슬라이드 길이 10m이하, 탑승높이 2m이하, 수심 1m이하)</p>

유형	명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진 및 정의)
라) 놀이 형	미니수중 모험놀이	 <p>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등 복합놀이요소 기구를 이용자가 즐기는 유기기구(슬라이드 전체 길이 10m이하, 탑승높이 2m이하, 수심 1m이하)</p>
	미니워터 에어바운스	 <p>물놀이형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주입장치식 공기막 유기기구(탑승높이 3m이하, 설치면적 120㎡이하, 수심 1m이하이며, 수심 및 착지부 풀 전용)</p>

참고 3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 2)

분류	놀이기구 사진		
<p>①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 받침판이 앞뒤 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p>			
	단일 회전축 그네(1형)	다 회전축 그네(2형)	
			
	단일 지점 매달림 그네(3형)	연결 그네(4형)	
<p>②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독립 미끄럼틀	독 미끄럼틀	
<p>③ 정글짐 통나무, 파이프, 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사각 정글짐	복합 정글짐	원형 정글짐
<p>④ 공중 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좌석형	매달림형	

분류	놀이기구 사진		
<p>⑤ 흔들 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시소1형	스프링시소1형	흔들2A형
			
	흔들2B형	흔들3A형	흔들3B형
			
	흔들4형	흔들5형	흔들6형
<p>⑥ 오르는기구 봉, 로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p>			
	평행봉	늑철	철봉
			
	늘임봉(줄)	암벽오르기	복합형 오르기

분류	놀이기구 사진		
----	---------	--	--

⑦ 회전 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회전A형



회전B형



회전C형



회전D형



회전E형

⑧ 건너는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⑨ 조합놀이대
①부터 ⑩까지의 놀이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일 것



일반형



물이용형



분류	놀이기구 사진		
<p>⑩ 스페이스 넷 유연한 요소(예, 로프, 체인 등)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3차원 등반 구조물</p>			
<p>⑪ 폐쇄형 놀이기구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 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p>			
<p>⑫ 기타 놀이기구 ①부터 ⑩까지의 놀이기구 외에 어린이의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p>			
	모래집	소리전달기	자가발전 놀이
			
	물놀이대	모래놀이기구	기차놀이대
			
	점프볼	원반놀이기구	돌림판
			
	물이용형		

참고 4 놀이기구별 안전이용 픽토그램

A. 미끄럼틀



반드시 계단으로 타세요



발을 깔고 엎드려 타지 마세요



서서 팔을 들고 타지 마세요

B. 그네



바르게 앉아 줄을 꼭 잡고 타세요



줄을 꼬고 타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명씩만 타세요

C. 흔들놀이구



마주보고 손잡이를 잡고 타세요



시소 위에 서거나 뛰지 마세요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마세요

D. 정글짐



망사이로 목이 나왔을 때
줄을 흔들지 마세요



밑에 있는 친구를 밀지 마세요



꼭대기에서 뛰지 마세요

E. 회전놀이기구



회전할 때 매달리지 마세요



회전대를 발로 돌리지 마세요



회전 중에 친구와 장난(밧기)하지 마세요

F. 오르는 기구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쥐고 타세요



거꾸로 매달리지 마세요



꼭대기에 눕거나 앉지 마세요

G. 건너는 기구



건너는 사람을 가로막거나 줄을 흔들지 마세요



손잡이를 반드시 양손으로 잡고 타세요



기구 밖에서 건너지 마세요

H. 공중놀이기구



반드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세요



뒤에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한 손으로 타지 마세요

I. 조합놀이기구



통 위로 타지 마세요



거꾸로 타지 마세요















통속 밑에서 올라가지 마세요

※ 놀이기구별 안전이용 픽토그램 활용방법

놀이시설 표지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용한다.

참고 5 소방시설 점검 기준

점검 대상	점검 기준		
소화기	 <p>녹색 : 정상 노란색 : 압력미달 빨1회 : 충전아주세요</p>		
	지시압력계 적정여부	잘보이는 곳에 비치	소화기 노후도(10년이하)
	【점검사항】 1. 잘 보이고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여부 2. 구획된 실(33㎡이상) 마다 비치 여부 3. 안전핀 고정상태 및 지시압력계 적정여부 4. 소화기 노후도 확인(10년 이하 / 분말소화기에 한함)		
옥내 소화전			
	위치표시등, 사용방법 표기	호스 및 노즐 관리상태	소화전함 관리상태
	【점검사항】 1.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2. 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노즐 등 관리상태 3.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은 없는지 여부		
화재 발신기 및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도	발신기세트	화재 알림
	【점검사항】 1. 감지기 표본에 페인트등 이물질 부착 여부 확인 2. 감지기 탈락 여부,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3. 위치표시등 점등상태 및 10m이내에서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 4. 발신기는 부착장소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 대상	점검 기준		
<p>스프링클러</p>			
<p>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유수검지장치실 헤드 주위 살수장애</p> <p>【점검사항】 1.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살수장애물 설치여부 확인 2. 총별 유수검지장치실(알람벨브) 접근·점검 용이성 및 관리상태</p>			
<p>피난 유도등</p>			
<p>출입구 유도등 예비전원 점검버튼 유도등 식별 불량 사례</p> <p>【점검사항】 1. 유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 2. 유도등 설치높이 및 피난안내 방향이 적정인지 확인 3.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파손, 변형, 탈락되어 있는지 확인 4. 유도등 예비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스위치를 당겨 예비전원 작동여부 확인</p>			
<p>방화문 및 피난·방화 시설</p>			
<p>방화문 작동 장애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계단내 장애물 적치</p> <p>【점검사항】 1. 비상구 등 복도, 계단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여부 확인 2. 방화문 개방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 3. 방화문 훼손, 변형 등으로 틈새가 생기는지 확인 4.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 등 도어클로저 작동여부 확인</p>			
<p>피난 안내도</p>			
<p>피난안내도 작성기준 피난안내도 표준안 피난안내정보 제공</p> <p>【점검사항】 1. 피난안내도는 각 층마다 설치되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여부 2.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내 구획된 실마다 설치여부 확인 *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다운로드 [소방청 홈페이지 - 소방서식 -공지사항]</p>			

국민행동요령
화재



화재진압

■ 소화기 사용법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짊 움켜쥐는다.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 소화전 사용법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1. 2명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과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1.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허던 일을 멈추고
2.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3. 바닥에 엎드린 후
4.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소방관이 전하는 안전상식

■ 119 신고절차

본인의 위치(주소) ▶ 현재상황 ▶ 부상여부 ▶ 상황요원 안내에 따라 행동

 <p>일반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화기를 들어 발신을 확인 2 순서대로 119 숫자 누르기 3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p>휴대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19 숫자 누르기 2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p>인터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접속 2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3 성명 등 필수인적사항 기록 4 사고개요 정확히 기록 5 등록여부 확인 	 <p>공중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화기 들기 2 긴급버튼(적색) 누르기 3 119 숫자 누르기 4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 대류현상에 따라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p>1 손수건 등 두꺼운 대피용에 호흡기 보호막 형성</p>	 <p>2 자세를 낮춘다</p>	 <p>3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p>	 <p>4 한쪽방향으로 상의에 안전벨트를 착용한다</p>
--	--	---	---

■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은 의외로 쉽도록 4단계 절차로 기억합니다.

 <p>1 의식 및 호흡확인</p>	 <p>2 119 신고 및 AED 요청</p>	 <p>3 가슴 압박 30회</p>	 <p>4 인공호흡 2회</p>
--	--	--	---

■ 알아두시다면 은연중에 나를 지켜주고 있는 소방시설

 <p>재연설비</p>	 <p>화재감지기</p>	 <p>스프링클러</p>	 <p>주방용자동소화기</p>
---	--	--	--

관계기관 연락처

① 중앙기관

분야	기관명	연락처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88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어린이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574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043-719-2060
환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8
소방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② 지방자치단체 (직접 작성해서 사용 바랍니다.)

분야	기관명	연락처
유원시설업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제품		
식품		
환경		
소방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인 쇄 : 2023년 3월

발 행 : 2023년 3월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Tel. 044) 205-4216

인 쇄 처 : 나라인쇄 044)866-6384